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 · 편집인: 연수구청장 / 발행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428호 2024. 2. 5.(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204호(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2차)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208호(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3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예고) 5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4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예고) .. 26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33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44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 ... 67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74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8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88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9호(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98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1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08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4-12호(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118

회							
람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2차)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에 따라, 재활용 의류수거함 자진철거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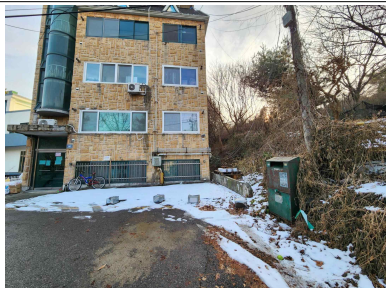
2024.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제 목: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2차)
2. 근 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3. 처분대상: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4. 2. 1. ~ 2. 20.
5. 공고내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지정된 관리자가 의류수거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 단지 내 운영은 제외)
 - 공고기간 이후에는 처분대상 의류수거함에 대해 철거 대집행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청소행정과 (☎ 032 - 749 - 7872)

[붙임]

처 분 대 상

연번	소유자	위 치	용 도	행위년도	현장사진
1	미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179번길 11-5 (옥련동 516-19)	의류 수거함	미상	
2	미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70 (청학동 569-2)	의류 수거함	미상	
3	미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73번길 46 (청학동 572-1)	의류 수거함	미상	
4	미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넘말로47번길 30 옆 (선학동 390-6)	의류 수거함	미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으로 운행정지명령한 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내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연수구청장

1. 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2 01 ~ 2024. 02. 29(29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소유자	차 명	운행정지 요청일자	사 용 본 거 지	운행정지 사 유
86머1810	윤**	봉고프런티어	2024.01.0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86소8859	윤**	액티언스포츠	2024.01.0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300어7932	비**	New Continental GT	2024.01.0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34서7515	비**	Mercedes-Benz E 250	2024.01.0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21무8744	비**	BMW X4 xDrive20i	2024.01.0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386조6769	비**	BMW X3 M Competition	2024.01.0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308도2238	비**	BMW 530e	2024.01.0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91소5976	비**	MINI John Cooper Works Countryman ALL4	2024.01.0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86다7652	현**	봉고III 1톤	2024.01.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9고0169	비**	BMW 520d	2024.01.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86어4057	비**	BMW 730d xDrive	2024.01.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204나9402	비**	BMW X5 xDrive30d	2024.01.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인천7머1099	성**	포터슈퍼캡	2024.01.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55보3552	이**	K5	2024.01.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58조8540	비**	BMW X4 xDrive20d	2024.01.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249저1917	비**	MINI Cooper Clubman(17 18 19)	2024.01.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9버7977	비**	BMW 330i M Sport Package	2024.01.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05저3424	비**	BMW 520d xDrive	2024.01.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229루8281	비**	BMW X4 M	2024.01.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47루9249	비**	MINI Cooper SD Countryman ALL4	2024.01.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32오9929	주**	스포티지	2024.01.2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29노6986	비**	BMW 730Ld xDrive	2024.01.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64너2831	비**	BMW 520d xDrive Luxury	2024.01.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06거9647	비**	BMW i3 120Ah SOL plus	2024.01.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02더4035	비**	MINI Cooper Countryman	2024.01.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24더4892	비**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350	2024.01.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4.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동법 제81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는 동법 제82조(벌칙)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동법 제8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749-880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 - 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사회복지기관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조례 적용 및 타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제4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 사회복지기관 장의 역할 (안 제6조)
-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7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 (안 제8조, 제9조)
- 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신변 및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연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훈련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채 사항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사회복지사법)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7조)
- 실태조사 (안 제8조)
- 지원사업 (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종합적인 비용 추계에 제약이 따름.

작성자 : 연수구의회 최숙경 의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 - 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택가 주차난 및 주차공간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내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에 대한 규정(안 제3조)
- 개방주차장 지정 요청에 대한 규정(안 제4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개방주차장 관리 및 안내표지에 대한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개방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2.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②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개방주차장 지정 요청) 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을 통해 개방주차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공동주

택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이 있으면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하는 주차면(이하 “개방주차면”이라 한다)이 5면 이상일 것
2. 개방주차면을 하루 7시간, 주 5일 이상 개방할 것.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개선비

가.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나. 주차장 옥외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다. 개방주차장 안내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라. 주차편의시설 보수

2. 운영지원비(시설개선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결정취소·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리 및 운영 등) ① 개방주차장은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개방주차장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사용 약정에 따라 개방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주차장의 깨끗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의 청소관리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④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 ①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의 규격과 형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 서행 및 경음기 사용 자제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3.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주차장 이용 금지
4.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금지
5.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6.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구획선 내 주차 및 개방시간 준수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개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 내 물품 도난, 차량 훼손 시 개방주차장 관리주체가 책임지지 않는다.

②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부설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제10조(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효율적인 개방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지정한 공무원에게 개방주차장 운영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개방유형	☐ 시설개선 ☐ 단순개방				
개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방면수	면 (옥내 면, 옥외 면, 기타 면)				
개방시간	○ 평 일 : ○ 토 요 일 : ○ 공 휴 일 : * 요일별, 시간별, 실정별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 내용					
사업명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기간	
	총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개방비용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관계법령 및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서면동의서 1부.				

관계법령 발췌사항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4.>

⑮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

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제5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내 용 :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 완화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5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 2024년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지원금 기준

나. 추계 결과 : 51,000천원

-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비 지원 : 15,000천원
 - 7,500천원(5면 기본개방)×2개소 : 15,000천원
-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비 지원 : 36,000천원
 - 20천원×50면×3개소×12개월 : 36,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 및 구비확보
 - 시 비 : 25,500천원 / 구 비 : 25,500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한성민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25,500	25,500	25,500	25,500	25,500	127,500
국시비보조금		25,500	25,500	25,500	25,500	25,500	127,500
세 출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개방주차장 지원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재원 조달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25,500	25,500	25,500	25,500	25,500	127,50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25,500	25,500	25,500	25,500	25,500	127,5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 - 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연수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수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 및 사업자와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사업 추진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안 제6조)
-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등(안 제7조)
- 환경감시단 구성 등(안 제8조)
- 악취 정보공개(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와 구민의 책무) 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구청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사업장 인근 구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3.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환경감시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감시단(이하 “환경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감시단은 악취발생시설,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감시활동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

다.

제9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악취 위반사업장, 악취농도, 악취방지 추진성과 등 관련 정보를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captan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환경감시단의 구성 등(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환경감시단은 기운영 중인 민간환경감시단이 대신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생략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 현 주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며, 구청장 등의 책무를 명시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 구분 삭제

나.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정비(안 제2조제1호)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라. 적용대상 삭제(안 제3조)

마. 제목변경(안 제4조)

-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서 다른 법규 및 조례와의 관계로 변경

바.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 강화(안 제5조)

-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에서 구청장 등의 책무로 변경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연수구민의 녹색제품 사용 권고

사. 포상 근거 조례 명시(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구 안”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다른 법규 및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을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 “구매이행계획”을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으로,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구매이행계

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
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중 “발굴하여”를 “발굴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
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u><삭 제></u>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뜻은 다음과 ----- -----.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이란 ----- -----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
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이란 ----- ----- ----- ----- ----- -----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	<u><삭 제></u>

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
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회사
무국

3.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및
기관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생략)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
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
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
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
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
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다른 법규 및 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
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
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등을 적
극 추진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
민”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인 소
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11.23.]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를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3. (생략)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② (생략)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 공표해야 ----.

② ----- 구매이행계획-----

-----.

1. -----
----- 녹색제품 -----

2. 3. (현행과 같음)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업 등의 기관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 법인, 종교·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 -----

---- 발굴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

관계법령 발췌 사항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2. 2. 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별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이 형 은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3.4.27.)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다. 경비 지원 및 지원절차 등(안 제4조~안 제5조)

라. 정산 및 지원 중단 사유,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6조~안 제8조)

마. 포상 및 준용, 시행규칙(안 제9조~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방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 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 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구성과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법일지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감독 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비 등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및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0000년 (0/0분기) 00자율방법대 · 연합대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방법대명	_____ 자율방법대	총인원	명
	방법대장		연락처	
신청내역	신청금액	금 원		
	입금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직위 :)		
사업내용	사업명	자율방법활동		
	초소위치	(연락처 :)		
	순찰지역			
	시설·장비			
	설립연월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법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자율방법대 운영현황 1부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 방범대명(대표자명) :

2. 대 원 수 :

3. 순찰일시/횟수 :

4. 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농·축산	자영업	회사원	건설업	서비스업	기 타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 적(m ²)	설치재원	비 고
초 소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	무전기	가스총	순찰봉	순찰차량		오토바이	기 타
				차 종	대 수		

[0000년 (0/0분기) 지원금 정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금 액	사 유
		- 집행잔액: - 이자수입:	

[실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

20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지출결의서

제000호	결재	총무		대장
지출과목 (비목)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		지출일	20 .00.00.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			
지출내용				
사용처			지출방법	
○ 건명 : ○ 일자 : 20 . 00. 00.(0요일) ○ 금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조장	방법대장

○○자율방법대 · 연합대 방법일지

20 년 월

순찰일시	순찰 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죠평방 활동 내용 등)	비고
		성명	서명		
월 일 (요일) 00:00 ~ 00:00	00명				

〈관계법령 발췌 사항〉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율방범대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8호, 2022. 4. 2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9조(지도·감독) 시·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한다.

제10조(교육·훈련) ① 시·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군·구에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기

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27호, 2023. 4. 25., 제정]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27.] [행정안전부령 제401호, 2023. 5. 4., 제정]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한다.

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복장·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 ② 시·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시·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헌행 연수구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2019.12.31 조례 제12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의 방범대 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조직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할 경찰

서장과 협의하여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관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방범대원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동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5조(설립 및 등록) ① 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관할 지구대 또는 치안센터(파출소)를 경유,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신청 사항이 적합한지를 검토·확인 후 등록가능여부를 해당 방범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설립 등록이 가능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신청 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제4조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해당 방범대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연합대 구성 및 역할) ① 연합대는 각 동의 방범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연수구청과 협력하여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할 수 있고, 방범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
2. 방범대 활용에 대한 야식비, 실소요 출동비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방법활동 교육경비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법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방법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 및 장비 등은 방법대원이 제3조의 임무 수행 시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방법대장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는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법대원에게 자율방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법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법대와 모범대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따르고, 방법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법대관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12.28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법대 및 연합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2.31.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법대 설립등록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법대 설립 신고증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법대 등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자율방법대 운영현황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 자율방범대법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예산 지원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자율방범대 조직 및 인원 현황은 2023년 기준으로 책정(14개 지대, 302명)
-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금은 현행 조례에 따른 야식비, 차량유류비, 소모성 운영비를 포함
 - 야식비는 매식단가의 1/2 적용하여 4,000원으로 책정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야식비 단가 준용
 - 차량유류비는 월 1회, 1대당 최대 50,000원으로 책정
 - 소모성 운영비는 순찰용품, 방역용품, 방한용품 등 구입 비용
- 자율방범대법 제정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자율방범대 지원 범위의 확대로 상해보험 가입비, 초소 환경개선 비용, 피복비를 추가하여 추계
- 상해보험 가입비는 단체 상해보험 가입 단가 38,000원으로 책정
- 물가상승률은 연 2%를 전제로 함.
- 관련 법령 상 경비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부담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나. 추계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자율방범대 지원	실비 지원	42,000	42,840	43,697	44,571	45,463	218,571
	상해보험 가입비	11,476	11,706	11,941	12,180	12,424	59,727
	초소 환경개선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피복비	15,100	15,402	15,711	16,026	16,347	78,586
	소계	88,576	89,948	91,349	92,777	94,234	456,884
자율방범연합대 지원	안전교육 및 워크숍	900	900	900	900	900	4,500
	결의대회 및 캠페인	1,950	1,950	1,950	1,950	1,950	9,750
	직무 경진대회	650	650	650	650	650	3,250
	소계	3,500	3,500	3,500	3,500	3,500	17,500
총 비용		92,076	93,448	94,849	96,277	97,734	474,384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14개 지대, 302명 기준)
 -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금 : 42,000천원
 - 상해보험가입비 : 38천원 × 302명 = 11,476천원
 - 초소 환경개선 : 20,000천원(연 2개소 지원)
 - 피복비 : 50천원 × 302명 = 15,100천원
- 연수구 자율방범연합대 지원
 - 방법순찰 안전교육 및 워크숍 : 900천원
 - Safe 연수만들기 결의대회 및 캠페인 : 1,950천원
 - 연수구 자율방범연합대 직무 경진대회 : 65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향후 경찰청, 인천시 등과 협의에 따라 예산 변동될 수 있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정 보 현 의원

※ 작 성 요 령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해	당	없	음	
	소 계							
세출	자율방범대 지원		88,576	89,948	91,349	92,777	94,234	456,884
	자율방범연합대 지원		3,500	3,500	3,500	3,500	3,500	17,500
	소 계		92,076	93,448	94,849	96,277	97,734	474,384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92,076	93,448	94,849	96,277	97,734	474,384
	지방세		92,076	93,448	94,849	96,277	97,734	474,384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 - 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계획 (안 제5조)
-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으로, 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

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추진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느린학습자 평생학습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학습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 평

평생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채 사항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추진사업 등 (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재정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최숙경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하기관” 관련 내용을 삭제함. (안 제 1조·제2조)
- 수탁기관 선정 시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 7조)
- 본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함. (안 제8조)
-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위탁기간을 명시함(안 제 11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안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하기관이 아닌”을 “일부를”로,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을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포함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구청장은 제1항에”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을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적격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8조의 심사위원회”를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통보하여야”

를 “통보해야”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통지하여야” 를 “통지해야” 로 한다.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위탁 계약기간

제8조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을 “심사할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 으로, “구성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 을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된 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구의회” 를 “의회”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도록 하여야” 를 “않도록 해야”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를 “체결해야”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 변동·재계약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제2항 중 “포함하여야” 를 “포함해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 를 “준수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서는 아니 된다” 를 “하지 말 것”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를 “사용하지 말 것”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행

하여야 한다”를 “이행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받아야 한다”를 “받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탁할 수 없다”를 “위탁하지 말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할 것”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작성·비치하여야”를 “작성·비치해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취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사업의”를 “사무의”로, “위탁사업”을 “위탁사무”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뢰”를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되는 사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u>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u>일부를</u> ----- ----- ----- <u>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민간위탁</u> “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u>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u>	1. “ <u>민간위탁</u> “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u>
2. “ <u>수탁기관</u> “이란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u>	2. “ <u>수탁기관</u> “이란 <u>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u>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4. 5. (생략)

제4조(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삭 제>

4. 5. (현행과 같음)

제4조(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

----- 않는 -----
-----.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 검토
해야 ----.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사항이 포함되어야 ---.

1. ~ 10.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제1항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

-- 선정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

----- 공개해야 -----.

③ -----

-----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 적격자 -----.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위탁 계약기간

⑤ (현행과 같음)

⑥ -----

-----.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⑦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
-----.

⑦ -----

----- 통보해야 -----.

----- 통지해야 -----.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심사할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된 후 -----.

③ ----- 의회 -----

----- 않도록 해야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한도액,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

----- 체결해야
--. 이 경우 수탁기관 변동·재계약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포함해야 -----.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

----- 준수해야 -----
-.

1. -----

----- 하지 말 것.

2. -----
----- 사용하지 말 것.

3.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6.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지도·점검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

3. -----

-- 이행할 것.

4. -----

----- 받을 것.

5. -----

--- 위탁하지 말 것.

6. -----
----- 노력할 것.

제13조(사무편람) ① -----

----- 작성·비치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도·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 ② (생략)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 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해
야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야 ----
----.

제18조(성과평가) ① -----
---- 사무의 -----

위탁사무----- 실
시해야 ----. -----

-----.

② -----
----- 위탁-----
--.

③ -----
----- 공개해
야 ----.

관계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 정 수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 (안 제 3조)
- 제6조의 제목 “회의”를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바꿈. (안 제 6조)
- 본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안 제6조·제8조·제11조·제12조·제13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제2조·제3조·제5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를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회의)”를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로, “임시회”를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개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제2항 중 “5인” 을 “5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 를
“해야” 로 한다.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u>따라</u>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따른</u> ----- ----- -----.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u>기타</u>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u>·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u> <u>· 제10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u>	제2조(기능)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u> 」에서 <u>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사항</u> 5. <u>그 밖에</u> ----- <u><삭제></u>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u>포함</u>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u>포함한</u>

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생 략)

③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
로 한다.

1. (생 략)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3.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속 공무원

4. 구의회 의원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통할한다.

② (생 략)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
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
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
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
집한다.

③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 사람

--.

1. (현행과 같음)

2. -----

----- 사람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
천하는 구의원

<삭 제>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임시

회의-----

----- 개최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소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전체 위원회에 반드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④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5명 -----

③-----

----- 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재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
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 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김 영 임 의원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실태조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설·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안 제 2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 6조)
-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통합하여 규정함. (안 제 9조)
-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 (안 제 11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안 제명·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인”을 “장애인차별금지 및”으로,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구 소속기관”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으로 한다.

제8조 중 “하야야” 를 “해야”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관한” 을 “관한 다음 각 호의” 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둘 수 있다” 를 “둔다”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대하여” 를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 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 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 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 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3.·4. (생략)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	<u>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u> 제2조(정의) ----- ----- 뜻은 -----.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요인 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 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 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4. (현행과 같음) 5. ----- ----- 뜻은 ----- ----- -----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u>----- -----

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② (생략)

③ 모든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

해야 -----.

② -----

- 해야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노력해야 -----.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 장애인차별금지 및 -----
----- 수립·시행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

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신 설>

<신 설>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군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교육) ① -----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홍보) -----

----- 해야
-----.

제9조(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

--- 관한 다음 각 호의 -----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

----- 인천광역시 연수구 -----

-----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삭 제>

제11조(포상) -----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태조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설·보완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김 영 임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조례상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인학대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인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 규정 신설(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 예방계획의 수립
 - 실태조사
 -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사업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노인”을 “노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만”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연수구민”을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를 “학대해서는 안 되며”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시행계획의 수립)”을 “(예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을 “예방계획”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행계획”을 “예방계획”으로 한다.

-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업비의 지원)”을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
2.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9조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u>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노인</u> 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노인</u>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 1. ----- <u>인천광역시 연수구</u> (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 -----. 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1. <u>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u> 2. <u>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u> · <u>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u> 3. <u>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u>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 ----- - <u>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u> ----- -----. <삭 제> <삭 제> <삭 제>

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를 위한 사업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
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
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신 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
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제4조(구민 등의 책무) -----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 학대해서
는 안 되며 ---- 노력해야 ----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
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

----- 포
합되어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 예방계획-----

-----.

제5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
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
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구축해야 -----.

제7조(사업 등) ① -----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
· 치료

2.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

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u>노력하</u> <u>여야</u>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 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 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u>아니</u> 된다.	----- <u>노력해</u> <u>야</u>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 ----- ----- ----- ----- <u>안</u>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실태조사 (안 제5조의2)
- 사업 등 (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작성자 : 연수구의회 장현희 의원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01. 3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순번	종류	기준점번호	세계측지계좌표				표지재질	소재지	설치일	설치 구분	보관 장소
			X	Y	위도	경도					
1	지적도근점	2589	536658.98	168945.92	37°25'43.6572"	126°38'56.9187"	철재	옥련동 125	2024-01-25	재설치	지적서고
2	지적도근점	2810	536622.88	169075.17	37°25'42.5020"	126°39'02.1809"	철재	옥련동 107-1	2024-01-25	재설치	지적서고
3	지적도근점	2811	536674.50	169098.51	37°25'44.1790"	126°39'03.1226"	철재	옥련동 107-1	2024-01-25	재설치	지적서고